

제천어린이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 안 번 호	/// 2
------------------	-------

제출년월일 : 2006. 11.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사유

- 방과후 어린이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지도를 위한 학습공간 조성과 어려서부터 올바르게 자랄수 있는 문화 및 복지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건립 중인 제천어린이복지센터 2곳을 민간위탁으로 운영코자 의안으로 제출함.

2. 위탁 필요성

- 어린이들의 독서실, 공부방 기능을 수행하는 어린이복지센터로
-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을 줄이고 문화복지사업의 민간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 위탁코자 함

3. 위탁개요

○ 신백동 어린이복지센터

1. 위치 : 제천시 신백동 26-3번지외 3필지
2. 규모 : 대지 - 910평, 건축연면적 - 104평(지상1층)
3. 사업비 : 689,052천원

○ 하소동 어린이복지센터

1. 위치 : 제천시 하소동 348번지
2. 규모 : 대지 - 1,361평, 건축연면적 - 102평(지상2층)
3. 사업비 : 582,098천원

○ 시설배치 및 용도

명칭	층 수	면적	용도	비고
신백동어린이복지센터	1층	104평	공부방, 유아방, 독서방, 정보방 사무실 및 상담실, 방풍실	
하소동어린이복지센터	1층	53평	독서방, 정보방, 화장실, 사무실 및 상담실, 방풍실	
	2층	49평	공부방, 유아방	

* 단 내부시설은 용도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위탁운영 조건

- 수탁수수료 : 무료(비 수익시설임)
- 운영관리비 : 120,000천원/년 정도(개소당 60,000천원)
- 위탁관리기간 : 3년간
- 운영계획(안)
 - 운영시간 : 09시 ~ 21시
 - 휴관일 : 매주 일요일, 신정·설연휴, 추석연휴

4. 수탁자 선정기준

- 본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확보된 법인 또는 단체로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적격자 선정

5.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14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7조

6. 참고자료

- 관계법령 사본
- 사업추진현황

관 계 법령

아동복지법

- 제14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아동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및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 (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 ③ 삭제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위탁기관”이라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3조(시설의 위탁) ①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제천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위원과 위탁 대상사무의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어린이복지센터 사업추진현황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기능과 시설을 갖춘 전천후 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도심지역과 외곽지역간 복지수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방과 후 놀이 및 학습지도의 전당으로 운영

□ 사업 개요

- 시설 수 : 2개소 (하소동, 신백동)
- 시설규모 : 하소동 2층 338㎡, 신백동 1층 344㎡
- 시설내역 : 유아방/독서방/공부방/상담실/휴게방/동아리방
- 수혜인원 : 용두동 6,800명, 신백동 5,600명 (해당지역 어린이)
- 사업비 : 16억원 (국비 8억원, 도비 4억원, 시비 4억원)

□ 추진사항

- | | |
|-----------|-----------|
| ○ 설계용역 실시 | 2006. 5월 |
| ○ 공사착공 | 2006. 9월 |
| ○ 준공 | 2006. 12월 |
| ○ 개관 | 2007. 1월 |

□ 기대효과

- 시 외곽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 및 복지시설 확충
- 방과 후 어린이들의 건전한 놀이 및 학습공간 마련
-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상담기능 강화로 건전아동 육성 이바지